

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김호진 의원

안녕하십니까? 김호진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·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중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이 지난 세 차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를 포함하여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도모 및 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